[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퇴원 · □중간)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공급받는자보관용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2014.07.03 ~ 2014.07.03	□ 야간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 일련번호)**
피부과		/ / 보험	201407 - 00960

항목			급여: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①	급여: 일부 본인부담 공단부담금②	급여: 전액본인부담③	비급여④
기본항목	진찰료		4,188	6,282		
기본항목	입원료					
기본항목	식대					
기본항목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기본항목	투약 및 조제료	약품비				
기본항목	주사료	행위료				
기본항목	주사료	약품비	56	84		
기본항목	마취료					
기본항목	처치및수술료		4,612	6,920		
기본항목	검사료					
기본항목	영상진단료					
기본항목	방사선치료료					
기본항목	치료재료대					450,000
기본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기본항목	정신요법료					
기본항목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선택항목	MRI 진단료					
선택항목	PET 진단료					
선택항목	초음파진단료					
선택항목	보철 · 교정료					
선택항목	기타					
선택항목	장기요양					
선택항목						
선택항목						
선택항목						
선택항목	약제상한차액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8,800	13,340		450,000
상한액 초과금 ⑤						

급여(본인부담금) 70%

금액산정내역		
⑥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472,140
⑦환자부담 총액 (①-⑤)+③+④		458,800
장애의료비/생활유지비 지원금		
⑧이미 납부한 금액		458,800
⑨납부할 금액(⑦-⑧)		
⑩납부한 금액	카드	
⑩납부한 금액	현금영수증	
⑩납부한 금액	현금	
⑩납부한 금액	합계	
⑪할인금액		
⑫미수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⑨-⑩-⑪-⑫)		
현금영수증	용도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현금승인번호	
카드승인내역	카드사	
카드승인내역	카드번호	
카드승인내역	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의 활용공간

이노병원 2014.7.03 원무수납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 · 보건기관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418-06-98537	상호	이노병원	전화번호 063-250-9000
사업장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53-5			대표자 문지현 (인)

2014년 07월 03일

항목별 설명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 · MRI · PET: 외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환자 자격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사항 안내

1. 이 계산서 ·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 ·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위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